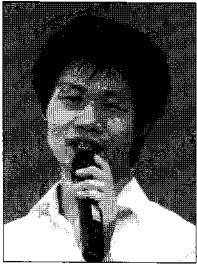


꼭 알아야 할 낙농경영 세무관리



노시환

미래세무회계 세무사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

(1)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1)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2)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3)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1) 수입금액 누락
- 2)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3)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4) 허위계약서작성 또는 명의위장
- 5)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3. 신고, 납부의 의미 및 요령

1)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

는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 2011년도 분은 2012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2) 면세사업현황신고

신고, 납부하기 전의 단계로 2011년도 분은 2012년도 1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2011년도 분 수입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신고서로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된다. 즉 2011년도 분을 매월 기장하여 합계금액을 옮겨 놓은 서식이다.



4. 영세율, 면세의 의미 및 적용분야

영세율이란 과세대상이나 일반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정부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제한특별법에서 면세사업자 중 농가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일부 약품 등을 구매하

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준다.

5. 세금의 환급범위 및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약품 등을 구매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거서류이며 제출대상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에 분기별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때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원본은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4) 작성 연월일

6. 세금절약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 1)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질 사업자가 세금 등을 체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책임을 진다.

- 2)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최근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사실 확인을 해야 하며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한다.

- 3)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4)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 5)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무기장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을 받는다.
- 6)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면 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은 기장세액공제, 이월결손금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이 있다.
- 7)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금융을 통하여 거래한 부분은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8)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라.
의무불이행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 합계표미제출),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사업장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계정과목 등 세부사항

- 과거와 달리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충실히 지켜주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아래의 기초적인 사항을 기술하였으니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참고하였으면 한다.

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약품 등의 부가세 환급

- 1) 세금계산서 사본을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에 제출하시면 된다.
- 2) 각 분기 분은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함 (예 : 1분기 분은 4월 25일까지 제출)

3. 축사건축

- 1) 축사를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고정자산이다.
- 2)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2009년 수입분은 2010년 5월에 신고함)

4. 4대보험

-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높아 부담이 클 수 있다.

5. 인건비

- 1)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일용직(아르바이트)은 고용,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된다. 같은 세대의 가족은 고용, 산재보험료가 없으며 가족임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6. 학원비

- 1) 본인이나 직원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2) 자녀 학원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7. 의료비

- 1) 사업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직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2) 자녀 기타 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8. 청첩장, 부의금

- 1) 청첩장과 부의금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2) 청첩장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부의금은 지출결의서나 메모장에 관계, 발인장소, 날짜, 장례식장, 금액을 기재하시면 된다.

9. 기부금

- 1)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 공제 가능함
- 2)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0% 공제 가능함

10. 기타 비용

- 1) 복리후생비 : 직원식사, 간식, 야유회 비용 등
- 2) 전력비, 차량유지비, 가스비, 수도료, 운반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이자비용 등

11. 절세방안

- 1)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만원이하 영수증(상대거래처명판과 날인)을 꼭 챙겨야 한다.

★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법으로 부여한 법정 납세협력 의무로서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근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부과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종합소득비과세 및 경비율

1.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 1) 전액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범위
 - 젓소 30마리, 소 30마리
 - 돼지 300마리, 양 300마리

-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등

2) 연간 1,8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 종류별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전액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축산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의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2010년 기준 : 16.3%)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2010년 기준 : 96.9%)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낙농업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 미만이거나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용어의 정의

목장용지란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속토지를 뜻한다. 그리고 축산업에 이용되는 축사관련 창고, 관리실, 축사의 진입도로 등도 목장용지에 포함된다. 결국 세법에서 인정하는 목장용지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와 관련부대시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서 축산이란 소, 닭, 돼지, 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용으로 열거된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장용지 역시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목장용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먼저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안이라도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축산업을 직접 영위해야 한다. 타인이 대리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목장용지는 농지와 달리 거주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목장용지가 소재한 지역과 다른 곳에 살더라도 직접 축산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목장용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에 기준면적이라는 요건도 있다. 기준면적이란 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적정면적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육용 소를 1마리 사육하는데 필요한 기준면적은 7.5㎡다. 그런데 실제 소를 1마리 키우면서 목장용지로 10㎡를 사용하고 있다면 7.5㎡까지는 축산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2.5㎡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주요동물의 기준면적을 살펴보면 한우의 경우 1마리당 7.5㎡, 돼지의 경우 5마리당 50㎡, 양의 경우 10마리당 8㎡, 닭 등의 가금류는 100마리당 33㎡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장용지의 경우에도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사업용 사용기간은 가족 수에 따른 면적기준과 맞물려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농지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보유기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이면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목장용지의 경우 보유기간 6년 중 3년 이상이거나, 4년 중 2년 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연평균 최고사육가축수가 기준면적 판단시 필요한 가축수 이상이 되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목장용지의 사업용 여부와 신고시 유의할 점

목장용지의 사업용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 수에 따른 기준면적 요건이다. 여기서 가축 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평균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가축두수를 적게 신고하면 목장용지의 매매시 비사업용에 해당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장의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추후 토지를 매매할 때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

농어민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한 경우 구매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 있고, 구매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구매한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은 품목이 있다.

사후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는 농·어민이 「농·축·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별표4” 및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를 구매한 경우에 한하며 구매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한 경우 농민 등이 조합원으로 등록된 농·수협 및 영업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㉞

[별표 5] <개정 2011.5.30>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뭇자리용, 발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곳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 · 화훼 · 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재(양액 · 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 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삭제 (2010.2.18)
13. 농업용 양수기
14. 범씨밭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킴
18. 화훼용 종지류
19. 채소봉지(애호박 · 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치랑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약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 · 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